

긴급좌담회 자료집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일시 | 2025년 5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차

목차	2
프로그램	3
사회자 모두발언.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4
토론1.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6
토론2. 공정한 절차가 신뢰를 만든다	9
토론3. 대법원의 '선거개입'이 우려를 낳는 이유	12
토론4.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 문제와 대응	14

프로그램

- 14:00 사회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 14:10 지정토론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 소장, 변호사)
오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객원교수 헌법학)
- 15:30 폐회

사회자 모두발언.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법은 공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야 한다”(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but must also be seen to be done, Rex v. Sussex Justices, 1924).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대선 국면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사법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상한 조치들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의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2025도4697) 그리고 이후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비상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대선 국면에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에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때로부터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의 결론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를 거쳤고, 5월 1일 관여 대법관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이 생중계를 한 이날 선고도 또한 이례적이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만에 사건을 형사합의7부에 배정하고, 재판부 역시 곧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발송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기일 지정과 함께 집행관 송달을 하면서 파기환송심의 이례적인 ‘속도전’도 역시 대선개입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대법원에서의 판결확정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재상고하는 경우, 상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의 상고장 제출기간(「형사소송법」 제374조), 다시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보장되는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전단)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판결의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확정하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써서라도 관철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담당 재판부 개인의 성향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심과 불안에 대해 법치의 최후 보루로 일컬어지는 사법부는 응당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23일간)는 재판 진행을 적절치 않다. 선거운동기간 중 공판기일의 지정은 그 자체로 문제이다. 항소심의 경우, 2회 연속하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이 강제되고 이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리 등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헌법원리인 민주주의를 침해한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권을 정당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등 법대로 재판할 것을 공식 선언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통령 선거 개입의사가 없음을 국민의,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사법은 공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법치의 붕괴,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 식대로의 법치로 인한 실질적 법치의 훼손으로 국민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었다. 대법원과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로서 다시금 내란세력과 같이 국민에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법은 ‘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을 향해, 법을 지켜달라고 말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대법원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사건 처리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법원의 이례적 사건 처리와 후속 파기환송심의 이례적인 ‘속도전’이 **12·3 비상계엄과 같은 법치의 훼손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1.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 소장, 변호사)

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한 외관을 확보했는가?

-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도 금함.
헌재 2021헌나1 결정의 소수의견에서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재판과정, 즉 재판의 외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판시.
- 소부에서 심리하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소부 배당 후 바로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한 날 바로 합의기일 진행. 이틀 후 한 번의 합의기일을 더 거친 후 전원합의체 회부로부터 9일 만에 선고. 언론과 국민도 놀란 “이례적 속도전”
-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심리가 좀 더 장기화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유례없이 단기간에 선고.
-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5인의 보충의견에서조차 심리 부실 비난을 미리 의식하고 이를 스스로 변호할 정도였다면 공정한 외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위 보충의견에서는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재촉하고 절차진행을 서둘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나치게 단기간에 결론을 낸 것 자체로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

2. 대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의 중요성에 합당한 충분한 심리를 하였는가?

-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유력 후보자의 입후보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또는 해석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더더욱 그에 합당한 충분한 심리와 설득력 있는 파기사유가 필요. 특히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의견, 과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상고심으로서 명백한 위법을 발견하지 않은 이상 자제가 필요.
- 다수의견처럼 발언의 허위성 등을 유권자가 받을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인상은 문제가 된 발언 부분 그 자체를 넘어 전체적 발언 맥락, 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소송기록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함. 그러나 다수의견을 보면 소수의견 수준으로 심리와 논증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임.
- 사건의 중요성에 걸맞은 대법관들의 토론과 숙고도 필요함에도, 전원합의체 회부로부터 선고까지 9일이라는 기간(그나마 그 중 상당 기간은 판결서 작성기간일 것임)은 6만쪽이 넘는 소송기록을 파악하기는커녕 재판연구관보고서만 가지고 토론과 숙고를 하기에 모자란 기간임. 전합 회부한 날 사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도 없이 불과 이틀 후에 단 한 번의 합의기일을 더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토론과 숙고가 형해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소수의견도 이를 지적하고 있음.
- 판결문을 봐도 보충의견에서 충실히 심리했다고 덧붙였을 뿐, 다수의견은 실질적으로 소수의견의 논증을 숙고하여 이를 극복할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정치인의 발언은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가?

-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의 장에서, 특히 정치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더 확장되고 발전되어 온 면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 특별히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하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허위성 등을 확대할 근거는 되지 않음.
- 오히려 정치적 사건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 정치적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반대 정치세력을 탄압할 빌미를 주게 됨.
- 사법 엘리트주의에 빠져 사법부가 정치와 정치인을 재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와 선거의 장에서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

4. 실질적인 전원합의체로서 작동하고 있는가?

- 소수의견이 논증하고 있듯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의견, 과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에도 무려 10인의 대법관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획일적 대법관 구성이라는 대법원의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 있음.
- 전원합의체가 권위를 가지려면 다양한 이념과 철학, 경험을 가진 대법관들의 치열한 토론과 숙고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비슷한 배경, 경력의 고위법관 위주의 획일적·관료적 대법관 제청·임명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대법관들은 자신을 제청해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임.
-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부담에 상응하여 대법관 수를 늘리는 상고심 개혁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아울러 개헌 시에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을 유지할지도 고민이 필요함. 적어도 재판 영역에서는 대법원장도 “one of them”으로서 참여해야.

토론2. 공정한 절차가 신뢰를 만든다

오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내버린 자멸의 길이었다. 대법원의 2025년 5월 1일 한 정치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선고 또한 그렇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할 단 한가지 원칙, ‘공정한 재판’을 내던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사건을 넘어 대법원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였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타인에게 수백 억씩 주거나 사형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은 적어도 사법부는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가능하다. 그 믿음은 사법부가 그러한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졌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하는가. 법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보통의 생각과 달리 사법부의 판단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다. 증명된 사법적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그렇게 찾은 사법적 사실은 그 자체로 참 또는 거짓도 아니고, 정의는 더더욱 아니다. 오로지 법원의 판결은 법 체계에서 절차에 따라 입증된 사실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때때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 법원의 결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사회의 운영을 위한 규칙을 지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한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판결이 그 자체로 정의롭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회가 정한 규칙에 정한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일 것이라는 믿음, 사법부가 그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만든다. 판사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직업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되어야 할 이유,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대법원의 진행, 서울고등법원의 진행이 절차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법원이 약 6만 쪽 정도의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형사기록은 읽어야 할 분량은 전체 기록보다 훨씬 적고, 제대로 읽지 않았다한들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절차 진행은 따져야한다. 검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20년 가까이 수만 건의 사건을 보아온 내 경험상 이런 진행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법조 종사자들이 그럴 것이다. 당사자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다.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한 진행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법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너무나도 특별한 신속한 진행을 두고 ‘대통령 유력 후보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진행을 했다’고 말할 것인가. 이 ‘특별 대우’는 법원이 특정인에 대하여는 다른 유사한 사건과 달리, 선택적으로 재판할 것이라는 선언일 수 밖에 없다.

‘나의 상식이 너의 상식과 다르고 나의 정의가 너의 정의와 다른’ 시대의 사회 전체의 동의는 어차피 존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한 규칙대로 진행되고 정한 규칙대로 적용되었다는 신뢰 때문이다. 법원의 이러한 선언은 정한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백을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변호사인 나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을 신뢰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SNS에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기본절차 규정까지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고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앞으로 보통의 나의 의뢰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이 나왔을 때, ‘뺨이 없어서’, ‘접대를 안해서’라는 말을 할 것이다. 법원은 초래한 불신지옥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 때문에 대법원장 탄핵 등의 극단적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둔 모든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밖에 없다. 하루만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 미래까지 유지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가 깨진 법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대립을 하여야 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법원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의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요구를 해야한다.

또한 법원도 ‘모든 것을 다 아는 내가 정의롭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초래한 불신에서 벗어날 고민을 해야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동의와 수용의 이유는 복종은 법관의 판단의 옳음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 진행과 공정한 적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진실은 사회적 정의가 아니고, 사법부가 자신의 진실을 사회적 정의라고 오인하여 자신들의 결정을 사회전체에 적용하려는 순간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이 된다. 공정성은 결국

규칙 적용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신뢰를 얻고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것만이 법원이 스스로 내다버린 법원의 존재가치를 찾는 방법이다.

대법원은 어떤 형사 사건에서든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절차의 정의가 모든 정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와 화합하는 법치주의를 고민하며,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규정 중에, 법원이 다시 한 번 읽었으면 하는 조문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토론3. 대법원의 ‘선거개입’이 우려를 낳는 이유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우리 국정의 혼란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에 규정된 대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어 6월 3일 대선을 향한 선거일정이 진행되고 있던 정국은 또다시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었다.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저마다의 경선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고 곧 후보등록과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만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정파적인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국정혼란 수습을 앞세우지만 선거일까지의 과정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속에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아직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을 일각에서 제기하듯 ‘사법쿠데타’라고 정의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일차적인 책임이 대법원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우선 의도되었던 그렇지 않았던,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삼권분립 하의 사법부는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킬 최종적인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권한과 책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을 기할 경우에만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속에 어떠한 결정이든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법리적 판단의 명백한 근거 제시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적인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둘째,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유권자 선택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는 핵심적인 기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집합적인 결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의 중요한 논란에 대한 판단기제로서 갈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선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이다. 이번 결정은 선거국면을 극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선택권을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대선 경쟁에 나설 정당의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 후보자격 상실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까닭에 유권자들은 선택에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행위와 자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유권자의 몫이며, 공적인 결정은 무엇이든지 간에 유권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국면을 뒤흔드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지극히 상식적인 작동방식에 직접적인 균열을 가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셋째,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열한 선거경쟁 속에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수집, 평가해야 하는 선거과정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당과 후보가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유권자가 판단함으로써 정치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때문에 선거는 공동체가 처한 제(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정당과 후보가 이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경우에만 제 기능을 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에서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다양한 사회 현안들의 논의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으로 축소시켰다. 중요한 선거이슈는 사장되고 한 쪽에서는 사법피해자로서의 억울함을, 다른 한 쪽에서는 법치의 존중에만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불평등, 기후위기, 인공지능기능에 따른 산업구조재편과 노동문제 등과 같은 거시적인 현안과 함께 정치적 양극화의 완화, 트럼프발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한 해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선거에 미친 악영향은 더더욱 안타깝다.

그간 우리 사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으로서 사회의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검찰이 법치의 집행자가 아닌 정치적인 도구로서 전략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인 데 반해, 법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중한 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전히 신뢰도가 높은 공적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다. 국가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고 모두 합심하여 최선을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현실에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안타까운 이유이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기관의 실수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공동체 전체 구성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선거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은 더욱

그러하다. 스스로를 정치의 한 가운데에 던져버린 사법부의 결정이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이다.

토론4.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 문제와 대응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객원교수 헌법학)

이번 사태는 대선개입인가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고법의 심리기일 지정은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다.

첫째, 판결의 전격성과 속도 때문이다. 2심 선고(3. 26.) 36일만이고,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결정(4월 22일)이 내려진지 9일만이다.¹ 서울고법의 경우, 5.1. 대법 판결이 내려지고 곧바로 접수·배당 후, 5.15. 기일을 정하고, 집행관 송달 방식을 취했다. 대법과 고법이 이례적인 속도로 일사분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대선이 목전이다. 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5.3.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지명했으며, 5.12.은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셋째, 국가공권력(사법부 포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며(제24조),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67조 제1항)과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제116조 제2항)를 보장한다.² 사법부는 중대한 범죄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 등)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유권자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헌정의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이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의한 대선개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대선개입,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법원은 선거과정에 사법부가 판결의 형식으로 개입함으로써,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 현재 문제되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혐의(1심 징역 1년,

¹ 4.22.사건배당 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 4.24. 두 번째 합의기일에 심리종결하고 선고기일 지정, 4.29. 선고 기일 발표, 5.1. 파기환송 판결.

² 헌법 전문이 계승하는 4.19민주이념은 공권력에 의한 선거개입이라는 불의에 대한 항거를 내용으로 한다.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통해 검증되고 판단받을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표출되어야 할 유권자의 판단을 사법부가 무리한 판단을 통해 선취하여 정치과정을 뒤틀고 있다.³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대통령직 상실이 교량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선법 제250조 제1항)는 헌법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많다. 실제 문제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은 대법원 판결(반대의견)에서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한 법률가라면,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대통령직 상실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판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적으로도 비례성을 상실했다.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법원은 향후 여러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반대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영향력은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강화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용할지 불투명하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각 재판부의 그때그때의 판단에 따라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만큼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법원의 존재이유는 ‘분쟁의 최종적 해결’이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의 형식으로 분쟁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 부과는 필연적으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선택적 수사·기소로 이어져 정치적 표현의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검찰과 경찰의 비대화를 가져온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수사기관과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관한 반성적 고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치적 대응, 소송법적 대응, 입법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정치적 대응으로는 법관탄핵이 문제된다.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고법 판사, 대법관 및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방안이다. 고법 판사 탄핵은

³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위법적이고 무리한 선고가 가시화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탄핵사유(헌법 또는 법률 위반)가 문제될 것이다.

대법관 및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경우, 사법행정을 무력화시킨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법관을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차후 법관들이 복귀하는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둘째, 소송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헌재법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으나(헌재법 제68조 제1항),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취소한 사건이 있으며, 법원의 재판이라도 재판에 적용된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헌법 위반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피고인측이 주장했던 쟁점(예를 들어, 증감법상 불처벌조항 등)에 대한 판단유탈이 확인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요청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법적 대응이다. 공선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전체를 삭제하거나, “행위”를 삭제하는 방안, 공선법 제11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법원의 재판 중지를 추가하는 방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하여 대통령 재직중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방안(형소법 제306조),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소를 취소하고 임기 종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형소법 제255조 제1항, 제329조) 등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사법개혁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서오남으로 대표되는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개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조일원화 등이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대법원을 독일식 최고법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서 앞으로 주시해야 할 문제는 사법농단의 재현 징후이다. 12.3. 내란 이후, 특히 윤석열의 구속취소 전후 법원의 행태는 그 이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것이다.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침탈로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소극적 태도, 대법원의 무리한 전합 판결, 서울고법의 이례적 절차진행 등은 마치 컨트롤타워를 갖춘 조직망의 일련의 행태처럼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진화한 형태로 재등장한다면, 사법개혁은 불가피하다.

긴급좌담회 자료집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발행일 2025. 05. 07
발행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